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01

발의연월일: 2020. 12. 21.

발 의 자:윤영찬·강병원·김상희

김영호 · 김홍걸 · 이광재

이용빈 · 임호선 · 홍성국

홍정민 의원(10인)

제안이유

2020년 1월 가명정보의 도입,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여전히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등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현재 개인정보의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에 따라 적법 여부가 나뉘는 이분법 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개정으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들이 통합되었으나 일부 규정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특례로 존치됨에 따라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하고 있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적정한 활용을 보장하면서 고의·중

과실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규제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행함으로써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었음.

이에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에 대한 규제를 개편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 중 일부를 삭제하여 일반 개인정보처리자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며, 법을 위반하거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한 경우로서 정보주체와의 계약체결·이행을 위해 필요한경우 등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호 및 제6호).
-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안 제39조의3, 제39조의5 및 제39조의7 삭제).
-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었던 과징금 규정을 모든 개인 정보처리자에게도 적용하되, 고의·중과실로 법을 위반하거나 법 제6

4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함(안 제34조의2 및 제39조의15 삭제, 제6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정보주체"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한 경우로서 정보주체"로, "불가피하게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전단 중 "명백하게 정보주체의"를 "정보주체의"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에" 를 "제3호 및 제5호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5조제1항에"로 한다.

제28조의6제2항 중 "제3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를 "제64조의2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로 한다.

제28조의7 중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8까지의 규정"을 "제39조의4, 제39조의6 및 제39조의8"로 한다.

제34조의2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중 "처리정지, 제39조의7에 따른 동의 철회"를 "처리정지"로 한다.

제39조의3, 제39조의5 및 제39조의7을 각각 삭제한다.

제39조의8제1항 본문 중 "제23조, 제39조의3"를 "제15조, 제23조"로 한다.

제39조의15를 삭제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되면"을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로 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4조의2(과징금)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은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경우
 - 2.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를 위반하여 개 인정보를 이용·제공한 경우
 - 3. 제17조제3항 및 제39조의12제2항 본문(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 4.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 5.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수집한 경우

- 6. 제26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 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7.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내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8. 동일한 사유로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매출액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와 비슷한 규모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재무제표 등회계자료와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

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⑦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 ⑨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제4호의5 및 제4호의6을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75조제2항제12호의2ㆍ제12호의5 및 제12호의6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	
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정보주체</u> 와의 계약의 체결	4. <u>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u>
및 이행을 위하여 <u>불가피하</u>	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
게 필요한 경우	침에 명시한 경우로서 정보
	주체
	<u>필요한</u>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	6
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로서 <u>명백하게 정보</u>	<u>정보주체의</u>
<u>주체의</u> 권리보다 우선하는	,,,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	
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 한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역	긴
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여	거
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	사
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여	5]
하 같다)할 수 있다.	

- 1. (생략)
-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
 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
 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
 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 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 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 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⑤ (생 략)

- 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저 과징금 부과 등) ① (생 략)
 - ②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1. (현행과 같음)
2 <u>利3</u>
<u>호 및 제5호에</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①
제15조제1항에_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2) ~ (5) (현행과 같음)
 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① (현행과 같음)

(2)

필요한 사항은 <u>제34조의2제3항</u>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28조의7(적용범위)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1조, 제27조, 제34조 제1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
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
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
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
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야 한다.
-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u>제64조</u>	의2제5항부
	터 제9	항까지	<u>o</u>	
제	28조의7	'(적용병	범위)	
		-제393	조의4,	제39조의6
	및 제3	9조의8		
	<삭 저]>		

-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 력 정도
- 2.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 는 훼손된 주민등록번호의 정도
- 3.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 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 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지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제39조의7에 따른 동의 철회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5조제 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개 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 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u>처리정지</u> -

② ~ ⑤ (현행과 같음)<삭 제>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 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 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필요한 최

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 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 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 인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 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 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 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 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 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 지하지 못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9조의5(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삭 제> 에 대한 특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삭 제> 대한 특례) ① 이용자는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제3 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을 요구하 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 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7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 23조, 제39조의3에 따라 수집한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u>제1</u>
5조, 제23조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이용내역 (제17조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 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 <삭 제> 대한 특례) ①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 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 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1.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39 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한 경 우
 - 2. 제22조제6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② (현행과 같음)

- 한다)을위반하여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만14세미만인아동의개인정보를수집한경우
- 3. 제23조제1항제1호(제39조의1 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이용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수집한 경우
- 4. 제26조제4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특례 수 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5.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 손한 경우로서 제29조의 조 치(내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 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
- 6. 제39조의3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

- 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 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 7. 제39조의12제2항 본문(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 과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 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비슷 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 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 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 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 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 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 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 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①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 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 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 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 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4조(시정조치 등) ① 보호위원 지 회는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 법을 위반한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세64조(시정조치 등) 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u><신 설></u> _____

- 1. ~ 3.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4조의2(과징금)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은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
 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
 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
 우
- 2.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1항·제2항 및 제19조를 위 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제 공한 경우
- 3. 제17조제3항 및 제39조의12 제2항 본문(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주체 또는 이

- 용자의개인정보를국외에제공한 경우
- 4.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 5.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수집한경우
- 6. 제26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 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7.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내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8. 동일한 사유로 제64조제1항 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2

<u>회 이상 받고도 시정하지 아</u> <u>니한 경우</u>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 과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 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 리자와 비슷한 규모의 개인정 보처리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 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 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이익의 규모
-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 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 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따라 징수한다.
- ①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의4. (생 략)

4의5.제39조의3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4의6. 제39조의3제4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

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 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 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 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 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⑨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벌칙)	

1. ~ 4의4. (현행과 같음) <삭 제>

<u><삭 제></u>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 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자

5. • 6. (생략)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 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 는 훼손당한 자

1의2. ~ 3.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12. (생략)
- 12의2. 제39조의3제3항(제39조 <삭 제> 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

5.・6. (현형	생과 같음)
제73조(벌칙)	
	·
<u><삭 제></u>	

1의2. ~ 3. (현행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 (생 략) 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1. ~ 12. (현행과 같음)

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12의3. • 12의4. (생략) 12의5. 제39조의7제2항(제39조 <삭 제> 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 인정보의 동의 철회·열람·정 정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의6. 제39조의7제3항(제39조 <삭 제> 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와 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 인정보를 이전받은 자를 포 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등

12의7. ~ 13. (생략) ③ ~ ⑤ (생 략)

12의3. • 12의4. (현행과 같음)

12의7. ~ 1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